

---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

2025. 11.

# 목 차

## I. 기업집단·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1. 지주회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완화 .....1
2.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2
3. 지주회사 벤처투자 규제 완화 .....4
4. 기업집단에 부동산투자회사 편입 제외 .....6
5. 가상자산거래업 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기준 합리화 .....8
6. 지배구조 개편 관련 조세 규정 정비 .....01

## II. 정책금융 및 기업대출 시스템 개선

7. 정책금융 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 ..... 11
8. 신용평가·담보요건 완화 ..... 13
9.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상품 활성화 .....5 1

## III. 자본시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

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 불필요한 해외법인 규제 제외 .....6 1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8 1
12. 해외 금융회사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 시 자본규제 완화 .....9 1

## IV.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기능 강화

13. 할부금융사 대상 불필요한 자동차금융 DSR 규제 제외 .....0 2
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기관 인정 검토 .....12
15. 캐피탈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취급 허용 .....2 2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제한 완화 .....32

## V. 보험사 자산운용(ALM) 및 건전성 규제 개선

17. 파생상품 활용 ALM 관련 규제 완화 .....52
18. 인프라 대출의 ALM 활용을 위한 장치 강화 .....7 2
19. 보험사 해외채권 대여 활성화 ..... 82
20. 선제적 ALM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 [RP매도 허용 확대] 0 3

# 1 지주회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완화

## 1. 현황

- 지주회사 지분 보유 관련 행위제한 규제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함

## 2. 문제점

- 지분율 요건 강화로 지주회사의 자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됨
  -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 \* 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
  - 추가 자본 투입 부담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전략적 투자 제약

## 3. 개선방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 폐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현행과 동일)  2. 삭제

## 2 |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 1. 현황

-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보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는 수신 금융사(은행 등) 뿐 아니라 여신 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 보유까지 원천적으로 금지 (공정거래법 제18조)

### 2. 문제점

- 금융 관련 규제만으로도 고객자금으로 계열사 확대 가능성 희박
  - 보험사는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주식과 채권 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3%·자기자본 6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자금운용에 제한
    - \* 보험사는 고객 예치 자금에 대해 만기 시 원리금 지급 의무 존재.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된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현재 K-ICS(신지급여력제도)로 대체돼 시행 중
    - \* K-ICS: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요구자본)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 비율을 130%로 규제
  -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함
    - \* 기타 규제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발생 증권 보유 금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담보제공, 어음배서 등) 금지 등
  - 여신 금융업은 여신기능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투자자)의 자금을 통해 기업집단 지배력을 유지·확대할 여지가 없음
    -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 교차 지배 어려운 구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은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통한 건전성 유지 등 법적 보완장치 규정

□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로 경쟁력 저하 우려**

- 해외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병행할 수 있어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사 보유금지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남
- \* (美) 구글 지주사 알파벳: 구글벤처스(투자업)와 구글캐피탈(금융업) 보유, 금융계열사가 그룹 내 신산업 발굴 투자를 적극 지원
- \* (日) 유통지주회사 Seven & I 홀딩스 산하 세븐뱅크: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ATM을 은행 점포망처럼 이용,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인프라 비용 감축해 시너지 창출

□ **소비자 이익 감소**

- 여신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해외 주요 제조업체와 달리 국내 일반지주회사는 여신금융회사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 제약
- 다수의 글로벌 제조업체는 계열 여신금융회사를 두어 제품 할부·리스에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스렌탈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의 진출
- 제품 할부 및 리스 등을 통해 구매력이 부족한 고객 대상 영업이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후생 증가

**3. 개선방안**

□ **지주회사의 여신금융사 보유를 허용, 장기적으로는 규제 폐지**

- [단기] 서비스 혁신 및 소비자 효용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가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장기]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규정 폐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5.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중략)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현행과 동일)    5. 삭제 (현행과 동일)

## 1. 현황

□ 지주회사가 CVC 및 벤처지주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각종 규제사항들 때문에 제한적 투자만 가능

-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 전문회사. 통상 CVC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 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
-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있으나 소유지분, 부채비율, 투자금 비율, 투자 대상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공정거래법 제20조)

- ① 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해야 함
- ② 지주회사 CVC는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 ③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④ 해외투자의 경우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의 20%까지만 가능

-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요건 및 지분율을 규제
  - \* 벤처지주회사 규제 : 설립 자산요건(300억원), 지분율 규제(상장·비상장 20%)
- 국내 CVC 벤처 투자액 비중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 주요국 벤처투자 시장 내 CVC 비중: (한) 19%, (미) 50%, (일) 45% ('23, 벤처투자기업협회)

## 2. 문제점

□ 부채비율 등 규제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한계

-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했으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제한적
  - \* 非지주회사 CVC는 투자조합을 조성해 계열사, 금융기관, 개인 등의 출자를 받아 자기자본과 관계없이 대규모 펀드 조성 가능
- 벤처지주사는 부채비율 제한(자기자본의 200%) 및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모집이 불가능하여 자산규모 이상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 非지주사 CVC와 벤처지주회사 운용자산 비교 〉

비교	CVC (A사 사례)	벤처지주회사 (가상 사례)
자본 대비 운용자산	자기자본 대비 약 76배	자기자본 대비 최대 3배
자본금	자본금 300억 ('18년)	자본금 100억 출자
운용자산	운용자산 약 2조 2655억 ('18년)	자산 300억 (부채 200억 + 자본 100억, 부채 200% 규제)

□ 투자 지분율, 해외투자 규제 등으로 투자 유연성 떨어짐

- 지주회사 CVC 관련 투자 규제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제약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불가능
- 美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은 보유하고 있는 CVC인 구글벤처스와 구글캐피탈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재무적 이익 창출
- \* 구글벤처스(GV)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 ‘우버’, 세계은행 송금 가상화폐 ‘리플’, IoT 생활가전 기업 ‘네스트’ 등 총 319개의 다양한 벤처기업에 약 54조원 투자

〈 구글벤처스 포트폴리오와 M&A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 ⇒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가 인수</li> <li>• 온라인 최저가 쇼핑몰 ‘jet.com’ ⇒ 세계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가 인수</li> <li>• IoT 생활가전 기업 ‘네스트’ ⇒ IT 기업인 ‘구글’이 인수</li> </ul>
--	---

- 벤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의 2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한계

**3. 개선방안**

□ 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 필요

- 지주회사의 CVC 및 벤처지주회사 보유 시 지분, 부채비율, 투자금 비율, 투자 대상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 1. 현황

-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 중
  - 계열사 편입 조건은 법인이사 등록으로 인한 지배력 행사 여부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2조 11호 및 1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2호)
  - 공정위는 운용사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등재되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 (자본시장법 제197조)

## 2. 문제점

- 펀드.리츠를 ‘계열사’ 로 일괄 편입하면 대기업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배력 갖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발생
  - 투자회사의 운영 관련 투자전략 및 투자자산, 운용사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주주인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 하지만, 운용사가 대기업 소속이면 부동산투자회사도 계열사로 편입되어 대기업을 지배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발생
- 자본시장형 투자수단을 기업집단 규율에 포함시키면 투자 위축 우려
  - 대중에게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계열 편입으로 대기업을 총자산과 계열사 수가 과대계상되는 정보의 왜곡 발생
  - \* 투자 Vehicle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대신 투자해주는 ‘투자 전용의 법인이나 기구’로 돈을 굴리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라는 의미

- 리츠는 고배당·공모확산을 통한 국민 배당소득 확대와 부동산 유동화·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집단 확장’ 보다는 자본시장 통한 ‘투자확대’에 부합
- 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는 실물지배가 아닌 자본중개 기능을 수행하므로, 금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에도 규제상 동일 선상에서 다뤄져 대기업의 출자·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 이러한 경직된 규제 적용은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 여력 위축과 부동산·신성장산업·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저해

### 3.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계열 편입 예외조항 추가 필요
  - 현행 유형外 부동산투자회사를 편입 제외 대상으로 추가
  - 이를 통해 지배 중심의 기업집단 규제와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를 구분하고, 기업집단의 투자 참여가 불필요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방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현행과 동일)  (단서 신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단순한 자본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동일인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 계열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 1. 현황

□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31조

○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

## 2. 문제점

□ 가상자산거래업 자산총액 기준 모호성 및 형평성 문제

○ 가상자산거래업은 고객 예치금을 포함한 자산총액으로 산정

○ 반면, 금융·보험업은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예치금은 산정 제외

\*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업은 금융·보험업과 산업분류가 다르다는 입장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예치금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제 아래 관리와 보호 의무를 준수

○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와 달리 가상자산업은 고객예치금에 대해서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

○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와 고객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 책임을 부과받고 있으며,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된 상황임

\* (근거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3. 개선방안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수익으로 내는 가상자산거래업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보험업과 동일하게 고객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 < 공정거래법 시행령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 -----, ----- <u>보험업, 가상자산거래업</u> ----- ----- -----

## 1. 현황

- 분할 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 2. 문제점

-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할 경우 존속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25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금지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특례조항으로서 현물출자가 가능했던 분할 전 존속회사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작용

## 3. 개선방안

- 분할 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생략) 1. (생략)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과 동일)          (신설) 다. 전환지주회사의 분할 전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 1. 현황

### □ 정책금융 안내 분산

- 기업이 정책자금보증·보험 정보를 얻기 위해 중소벤처24, 기업마당, K-Startup, 보증·보험기관별 홈페이지 등 다수 채널 별도 탐색 필요
- 기관별 자격요건·신청절차가 달라 정보 비교 및 접근성 제한

### □ 정부의 통합체계 구축 추진 중

- 중소벤처24를 거점으로 9개 정책금융기관 정보 표준화 및 자동연계 추진 중
  -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보·기보·무보·중진공·소상공인공단·지방신보

## 2. 문제점

### □ 플랫폼 기능이 정보 제공 중심에 머물러 있음

- 현행 통합포털은 기관별 정책금융 상품을 조회·비교하는 수준으로, 기업의 재무현황·자금용도 등을 고려한 AI 맞춤형 추천 및 실행 기능은 미흡한 단계

### □ 기관 간 데이터 구조 및 심사기준의 상이성

- 정책금융기관마다 상품 구조·분류체계·심사절차가 달라 데이터 표준화 및 자동연계의 완성도 제고 필요

### 3. 개선방안

#### □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고도화

- 단순 조회 중심에서 나아가, 기업의 업종·규모·재무현황·자금용도를 AI가 분석·판단하여 최적의 정책금융 상품을 자동 추천·신청·실행하는 지능형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
- 이를 통해 기업은 지원 가능 한도, 보증·대출 절차,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경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금융지원 체계를 경험할 수 있음

#### □ 정책금융-인접제도 간 연계 강화

- 정책금융과 R&D·보증·수출지원 등 인접 지원제도 간 데이터를 연결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AI 추천 기반 경로를 통해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 예) (성장초기) R&D 자금 → (중기) 보증 및 운전자금 → (후기) 수출금융 정보 제공

## 1. 현황

### □ 정책자금 대출 심사 체계

- 정책자금 지원 시 대부분의 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은 신용평가 및 담보심사를 필수 절차로 운영
- 신용등급은 NICE · KCB 등 민간 CB사 또는 자체 평가모형을 활용하며,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

## 2. 문제점

### □ 절차 중복에 따른 자금 집행 지연

-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도 동일한 신용평가 · 담보심사를 반복해야 함
- 일부 프로그램에서 협회 · 조합 등 추천기업 우대제도가 시범 운영 중이나, 추천 받은 기업이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해 자금 집행 지연 사례 발생

### □ 담보 중심 평가 관행 지속

- 기술력 · 수출성과 등 비재무역량이 충분한 기업도 담보 부족 시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가 존재하지만, 보증 한도가 제한적이거나 심사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 사후관리 부담 과중

- 정책자금 지원 이후 용도 증빙 · 보고 의무가 복잡해 중소기업은 행정비용 부담, 담당 기관은 인력부족으로 관리 효율성 저하

### 3. 개선방안

#### □ 신용평가 완화

- 추천기관(협·단체, 조합 등)이 사전 검증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시 별도 신용평가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적용

#### □ 담보요건 완화

- 실적기업 및 ESG·수출유망기업 등에 대해 담보 요구 비율 완화
- 보증기관(신보·기보) 보증서 대체방식, 비담보 신용대출 한도 상향 추진  
\* 금융위원회 2025년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안」의 ‘무담보·저보증 정책금융 확대’ 방향과 일치

#### □ 사후관리 제도 개선

- 정책자금 통합포털을 통해 전자영수증·계좌연동 자동확인 도입으로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

## 1. 현황

- 10년 이상 장기·저리 시설자금 대출 상품 부재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3~5년 위주로 실행
  - 국고채 또는 산업금융채권 기준으로 대출 실행

## 2. 문제점

- 반도체 장비 투자의 경우, 회수기간 10년 이상 소요
  - 2~3차례 만기 연장 필요
  - 금리 조건(스프레드) 변동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 발생
-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국고채 및 산금채의 경쟁력 의문
  - 現 기준금리(2.5%) 대비 국고채 3년 2.74%(‘25.11월), 산금채 1년 2.51%(‘25.11월)로 오히려 높은 수준
- 단기적인 금리 혜택 (거치기간 1~2년에 한해서만 마이너스 스프레드 적용)
  - 금리 혜택 기간 경과 後 이자비용 부담↑
    - \* 설비투자부업 프로그램(‘20년) : 2년 거치 3년 분할, 금리 1.5% (2년간 마이너스 0.3~0.4%p 적용), 이후 3년간 금리 3% 초반(산금채 기준 플러스 스프레드 적용)

## 3. 개선방안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상품 활성화
  - 10년 이상 상품 적극 확대 및 장기 대출상품에 대한 마이너스 스프레드 적용
  - 금리 혜택 기간을 거치 기간만이 아닌 만기 시 까지 확대

## 1. 현황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기업집단 소속 해외금융회사까지 감독대상에 포함

〈주요 감독사항〉

- ▶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 선정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공시보고
- ▶ 추가위험평가 실시 (매년) :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자산자본 반영
- ▶ 위험관리실태평가 실시 (3년 단위) : 그룹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100% 이상)

- \* (근거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1.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 \* (지정기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 제외)
- \*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해외 금융회사 포함)

## 2. 문제점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 조건의 해외금융회사까지 통합자본적정성 산정대상에 포함되나, 금융지주회사는 최다출자 계열회사만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국내 금융회사 출자 지분이 없거나, 합작투자·외국법상 자본규제 부재 등 모든 경우에 감독대상 포함
-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최다출자 계열회사만 포함하며, 지배하지 않는 해외금융회사는 제외되어 규제 차이 존재
- \* 은행지주회사 연결기준 자본적정성 산정방식 : 최다출자자 아닌 그룹 계열사, 보험자회사, 비금융회사(금융업 및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연결 제외 → 1번 출자지분 관계기업투자 항목 별도 인식(금융복합기업집단도 동일하게 관계기업투자 항목 별도 인식 중)

- 해외금융회사 포함으로 무관한 리스크 노출 및 과도한 비용 발생
  - 외국법령상 자본규제 없는 해외 금융회사는 통합자본적정성 지표 산정을 위해 규제자본적립(자산의 8%)이 필요
  - 위험 감독대상 지정 필요성이 낮음에도 미미한 실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금융회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국제적 정합성 및 정책 일관성 저하

- 해외금융회사의 자본규제 유무에 따라 통합자본적정성 지표가 왜곡되어 그룹 건전성 평가를 왜곡·호도

**<감독대상에 포함된 해외금융회사가 국내금융그룹 통합자본적정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해외 금융회사의 소재지국 자본규제 유무		통합자본적정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규제 ○	국내 대비 강한 규제	비율상승
	국내 대비 약한 규제	비율하락
규제 X		비율하락

-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상충되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상실 및 수출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3. 개선방안**

- 현실적 제약 고려, 규제 실효성 확보 위해 해외법인 관련 적용제외 규정 신설
  - (예) 국내 금융계열사 회계상 종속회사 아닌 해외법인 제외 등

#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 현황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통과 후 증권사 참여 제한

- 혁신기업과 비상장 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 ('25.7월) 했으나, 본회의에서 이해상충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 참여 제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공모 형태로 투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펀드

- 본회의에서 증권사는 고유계정과 고객자산을 동시에 운용·판매하는 구조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참여 제한

## 2. 문제점

### □ 증권사 참여 제한으로 BDC의 자금조달 기반 약화

- 자산운용사·VC만으로는 설립 최소금액(500억) 조달에 한계
- 증권사 참여 제한으로 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VC) 중심의 협소한 구조가 형성되어 BDC의 자금순환이 미완성되고 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제약

### □ 이해상충 우려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반영된 규제 설계

- 증권사는 이미 차이나스월\* 등 내부통제체계를 운영 중으로 과도한 보호논리로 시장 진입이 전면 차단되어 혁신자본 공급의 효율성 저하

\* 차이나스월(Chinese Wall)이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교류를 차단(Information Barrier) 하는 내부통제 장치

## 3. 개선방안

### □ 증권사 참여 허용을 통해 BDC 활성화 기반 마련

# 12 해외 금융회사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시 자본규제 완화

## 1. 현황

- 국내 증권사(모회사)가 해외 금융사(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연결대상 자산 전체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으로 산정하여 계산
  -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증권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
  - \* (근거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4-2]

## 2. 문제점

- 실제 위험액은 출자지분으로 한정되지만, NCR 지표 상 위험액은 자산 전체로 산정되므로 위험액이 과다 계상되어 지표 왜곡
  - 국내 비즈니스 위축, 해외 투자 여력 저하 가능성

## 3. 개선방안

- 연결대상 자산 전체가 아닌 출자금액에 한정하여 NCR 위험액 산정
  - 국내 증권사의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 법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4-2]〉

현 행	개 정 안
1.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생략)	1.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생략) (신설) 다. 해외에 설립된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손실위험이 출자금액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 회사에서 제외한다.

# 13 할부금융사 대상 불필요한 자동차금융 DSR 규제 제외

## 1. 현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할부금융사의 자동차금융 포함
  - 21년 DSR 규제가 모든 금융기관 및 상품에 적용되면서, 자동차할부 금융도 DSR 부채산정 기준에 포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개인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자동차 할부대출 원리금도 DSR 계산에 포함 (21.1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 2. 문제점

- DSR 규제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강화되었음에도 자동차 금융까지 적용되어 실물경제 자금공급이 위축되고 소비 제한 초래
  - 자동차금융은 실수요자 대상의 생산적 금융임에도 부동산 규제 영향을 받아 공급이 제약되고, 타 소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 DSR 규제가 자동차에만 적용되어 산업적 역차별 발생
- 자동차산업은 제조·수출 등 산업연관효과가 높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본래 목적과 무관한 규제 적용은 불합리

## 3. 개선방안

-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자동차금융의 DSR 적용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생략) 1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 (중략) 나. 감독규정 <별표3> 제5호마목(5)에서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중략)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현행과 동일)          (신설) (12) 실수요 목적의 승용차 금융

## 1. 현황

- 커머셜\*은 100% 사업자 대상으로 대출하는 금융사로 커머셜의 개인차주는 소상공인과 동일한 성격

\* 상용차·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할부·리스 금융을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2. 문제점

- 개인차주 고객의 정책자금 지원 사각지대 존재
  - 현재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등 일부 기업·기관에 한해 정책자금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개인차주 고객은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함

## 3. 개선방안

- 커머셜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 인정
  - 유가 변동, 경기 변화 등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소득 구조의 변동이 심한 화물·건설 차주에 대해 주요 지출 부분인 할부금융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장 안정성 제고
  -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할부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차량 구매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신용 회복을 지원

# 15 캐피탈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취급 허용

## 1. 현황

- 현재 신용보증기금법상, 보증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캐피탈사는 제외되어 있음

## 2. 문제점

- 커머셜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목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 연계 상품을 통한 여신지원 사례는 매우 제한적

## 3. 개선방안

- 신용보증기금법 내 보증 대상 금융기관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
  - 캐피탈사 활용으로 보증부 대출 기관 다변화 및 사업목적의 신속한 여신 지원, 중소기업자금 공급 확대

###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현행	개정안
제3조(금전채무 등) (생략) 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 9. 30.>	제3조(금전채무 등) (현행과 동일) 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u>여신전문금융업법</u>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 9. 30.>
(생략)	(현행과 동일)

- 보증상품 취급을 위한 캐피탈사-신보간 보증상품 개발 등 활성화
  - 신보의 정책 보증에 대한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국가 정책 확대 시 빠른 전달력 제고

## 1. 현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2. 문제점

□ 차입대상 제한으로 우량 모회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및 유동성 위험 관리 수단이 제한

-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내수경기 부진 지속으로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및 시중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상승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비금융 모회사로부터의 직접 차입이 불가능하여 금융시장에서 모회사의 보증을 받아 금리부담을 낮춘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부담 및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 중

## 3. 개선방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만 허용 → 차입제한 완화

-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 혹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p> <p>(생략)</p>	<p>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p> <p><u>(단서 추가)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모회사 또는 최대주주로부터의 차입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u></p> <p>(현행과 동일)</p>

## 17 파생상품 활용 ALM 관련 규제 완화

### 1. 현황

- 보험사는 가용자본의 대부분을 장기채 매수에 사용 중
  - IFRS17/K-ICS 도입이후 보험 시가평가로 금리위험 관리 부담 증가
    - \* 납입중인 계약도 완납기준으로 금리위험 노출
  - 보험의 만기 > 자산의 만기 → 장기채를 통한 만기매칭 증가
    - 장기국채 발행량의 대부분(70% 이상)을 보험사가 매수 중이며, 자금 부족으로 본드포워드를 통한 매수 지속 증가 중
      - \* '25년 15조 거래 예상 / 전체 잔고 60조 추정
      - \* 본드포워드는 3~5년후 자금소요로 장기채 대체관점에는 한계 有

### 2. 문제점

- 장기채 중심의 ALM 운용으로 보험사의 모험자본 투자 여력 위축
  - \* ALM(Asset-Liability Management)은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자산)과 부채(지급의무)의 만기·금리·현금흐름 구조를 일치시켜 금리·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리기법
  - \* 보험회사는 장기부채(보험금 지급의무)가 많아,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ALM이 핵심 관리 항목으로 작용
- 모험자본 투자는 ALM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ALM 안정화를 위해 가용자본의 대부분이 장기채 매수로 소진되는 상황
  - \* ALM 부담으로 예정된 장기 투자계획도 장기채 매수로 전환 등
- 회계 불일치로 인한 파생상품 등 대체적 ALM 수단 활용 한계
  -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사의 파생상품 보유한도는 폐지되었으나, 회계 불일치\* 이슈로 실제 사용이 소극적
    - \*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시가로 즉시 인식되는 반면, 이를 헷지하는 대상(채권·부채 등)은 시가평가가 달리 적용되어 실제 경제적 위험은 줄었는데도 회계상 손익이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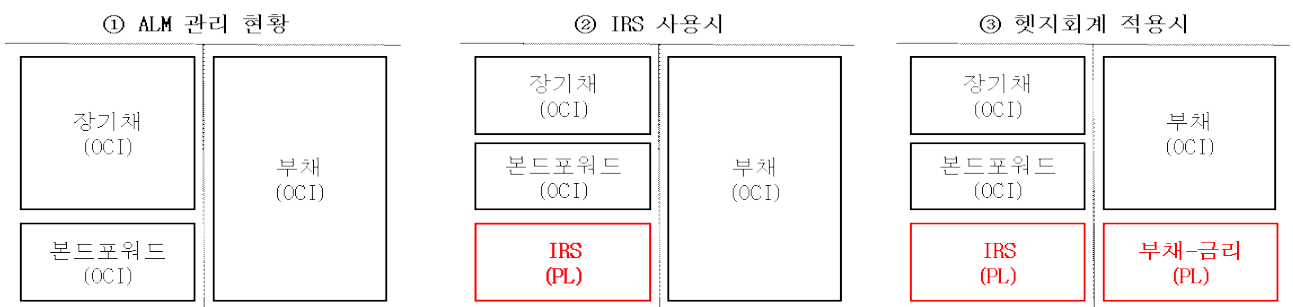
### 3. 개선방안

#### □ IRS의 회계 불일치 해소를 통해 모험자금 공급환경 조성

- 보험부채 중 금리위험이 있는 계약을 헷지회계 대상으로 지정하면, 파생상품과 부채 평가 간의 회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헷지회계 적용 시,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보험부채 변동이 일치되어 금리위험 관리 효과가 회계상에도 반영됨
- \* 캐나다 Manulife는 일부 고정형 계약(10~15%)을 대상으로 헷지회계를 통한 ALM 관리 실행 중
- IRS(이자율스왑) 활용으로 자금 소요없이 장기채 매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헷지회계가 가능한 계약(전체의 약 10%)을 대상으로 점진적 적용 시, 장기채의 약 10% 대체 효과
- 투자계획 수립시 파생상품 확보를 고려하는 등 투자계획 수립 시 파생상품을 포함한 ALM 전략을 병행할 수 있어 모험자금 공급 확대 여건 마련
- \* 헷지수단은 IRS의 기초지표인 KOFR-OIS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 ※ [참고] IRS 사용을 통한 ALM 관리

#### □ ALM관리는 부채가치 변동을 채권 등으로 매칭하여 상쇄하는 활동



- ① [ALM 관리 현황] 부채변동이 OCI로 분류됨에 따라 OCI로 분류가 가능한 장기채와 헷지회계 적용가능한 본드포워드로 매칭 중
- ② [장기채 대신 IRS로 매칭할 경우] IRS는 장기채와 유사한 부채가치 상쇄 효과가 있으나, 손익을 OCI로 처리하기 어려워 손익 변동성 발생
- ③ [헷지회계 적용시] 보험부채 금리위험요소를 별도 측정, IRS와 PL내에서 매칭할 경우 본래 목적인 위험경감 달성하고, 손익변동성도 낮추는 효과

## 1. 현황

- 인프라 대출은 만기가 긴 편이며 수익률도 높은 장점이 있어,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 제고에 도움되는 자산
  - 인프라 대출은 만기 20년 내외로 초장기채와 유사하나 크레딧 Spread와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해 수익률이 높음
  - 초장기채와 병행 투자시 듀레이션 확대 및 이원 제고도 가능
  - 인프라는 유동성은 낮지만, 장기부채를 가진 보험사에 적합

## 2. 문제점

- 인프라의 조기 상환 등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존재
  - 조기 상환이 발생할 경우 자산 만기가 단축되어 재투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어려움
  - 초장기 부채와의 매칭이 필요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금흐름 변동이 ALM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3. 개선방안

- 인프라 대출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조기 상환 보호 조항 마련
    - \* ex) Make Whole 조항 : 조기 상환시 투자자에게 잔여 기간 예상 원리금의 현재 가치를 보전
  - 최소 수익률 보증
    - \* ex) Availability Based PPP(민관협력사업) : 시설 제공의 대가로 정부가 대금을 지급하여 수요 위험 無
  - 추가적으로 K-ICS 상 인프라 관련 리스크 경감조치 마련 등 제도 개선 병행 필요

## 19 보험사 해외채권 대여 활성화

### 1. 현황

- 보험사는 보험업법 신용공여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보유 국내채권 대여 → 유동성 공급, ALM 관리 및 부수적인 수익 창출
  - 유가증권 대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손실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시 제외 가능
  - \* 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결손 발생시 한국은행 등 정부로부터 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대여 거래 등

### 2. 문제점

- 신용공여 예외 조항의 해외채권 대여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보험사의 해외채권 대여시장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
  - 예외 조항이 미적용 될 경우, 보험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판단되어 관리·운용 리스크 노출로 시장참여 제약
  - \* 일일 단위의 담보물 설정 및 관리/정산, 대여 채권의 이자 지연, 채권 Recall 시 인도 지연, 시장참여자 선별의 어려움. 계약한 차입자의 운용 전략에 따른 대여 실적 변동, 대여 채권의 적정수수료 산출의 어려움 등의 리스크 존재

### 3. 개선방안

- 해외 예탁기관을 통한 대여중개서비스(Agency Lending)에 대해 신용공여 예외 조항 적용
  - (1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별표 1의2 주석에 관련 문구 추가)
  - (2안)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예외 조항 적용 여부 명확화  
⇒ 손실가능성이 낮은 채권대여는 국내외 구분없이 예외 적용

- \* 현재 해외 예탁기관(JP Morgan, Citi Bank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여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대여자 손실가능성은 국내 거래에 준하여(중개기관에서 담보 수취 및 일정산 실시, 기관 디폴트시 대여자 우선 상환 등) 관리됨

□ (기대효과) 안정적인 대여 수수료 취득으로 보험사 투자수익 제고

- 글로벌 대여 시장 참여로 투자비용 상쇄, 해외채 추가 수익 가능
  - \* 연간 예상 수수료는 10조당 약 7~8억 수준 전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장기 대여 여부에 따라 수수료율은 채권마다 상이
- 차입자 관련 대이행 책임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에서 1차, 대여자가 2차로 필터링하여 차입자 리스크를 최소화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

현 행	개 정 안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중략)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현행과 동일) (신설) <u>외국증권대여기관(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u>

## 1. 현황

- 현행 규정상 보험회사 차입은 재무건전성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은행 당좌차월,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도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차입 가능
    - \* 현재 '변액보증위험 헷지에 대한 운용자금 정산시 RP 매도를 허용 중(보험업감독규정 7-9조의2)

## 2. 문제점

- '23년 부채시가평가 도입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부채관리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현 차입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활용 제약
  -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의 시장리스크 헷지를 위한 파생거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험업법상 파생한도 규제가 폐지('22.12월)되었음에도, 현행 차입 규정이 모호하여 파생상품 헷지 운용자금 확보에 어려움
  - 파생상품은 일일정산 후 필요 시 증거금을 추가 납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운용자금 확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 예) 보유자산 매각 혹은 현금성 자산 확대로 고객수익률 제고 차질 가능성
- 또한 헷지 목적 파생상품의 일일정산을 위한 RP매도가 법령상 유동성 확보 행위로 인정되는지 불분명
  - 현행 규정은 '변액보증위험' 헷지에 한해서만 RP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보험부채 헷지 목적의 RP매도는 법적 근거 미비
    - \* 타 금융업권·해외 보험사들은 헷지 목적으로 다양한 차입 수단을 활용 중이나, 국내 보험업권은 변액보증위험 헷지 목적으로만 RP매도 허용 중

### 3. 개선방안

□ 보험부채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 운용자금 정산시 현금 외 RP 매도 등을 허용하도록 개정 필요

○ 현재 ‘변액보증위험’ 헷지에 대한 운용자금 정산시 RP 매도를 허용 (인정)하는 차입 규정을 ‘보험부채’로 확대

○ 유동성 관리 부담 완화로 보험부채 헷지 기반의 정교한 ALM 관리 가능  
- 금융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서 보유자산 매각으로 시장에 추가 영향을 주지 않고 증거금 납입에 대응이 가능

\* 기존 : 금리 급등 → 정산금 납입 필요 → 보유채권 매각 → 금리 추가 상승

#### <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의2 >

현 행	개 정 안
① 보험회사가 <b>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b> 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 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① 보험회사가 <b>보험부채의 변동성위험</b> 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 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 일관성을 위해 공시기준이율 관련 시행세칙도 개정이 필요

○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 제외되는 파생상품 손익 관련 문구에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보험부채의 변동성’으로 변경

#### <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7조 >

현 행	개 정 안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 시에는 시가평가되는 <b>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b> 하기 위해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 시에는 시가평가되는 <b>보험부채의 변동성을 헷지</b> 하기 위해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b>위험회피수단의 손익</b> 은 제외한다.